

현안과 과제

■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 추정

1. 개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취약하고 그 중에서 특히 위조 상품의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 경쟁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지식재산권¹⁾ 보호 수준은 2013년 기준 한국이 전체 60개국 중 40위에 불과함
 - 세계관세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교역 과정에서 위조 상품 적발 건수가 많은 순서로 적출국을 나열할 때 한국은 15위를 기록함(2011년 기준)
 - 또한, OECD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관련 위조 상품 연관 지수 (general trade-related index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of economies) 순위는 조사 대상 134개 국가 중 49위, OECD 31개 국가 중 2위를 기록함

- 주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의 유통이 만연될 경우 유·무형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유발함
 - 위조 상품(Counterfeit Goods)²⁾이란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적당한 권한 없는 제3자가 불법으로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³⁾
 - 위조 상품의 유통이 만연될 경우 국가브랜드 실추, 세수 저하 및 지하경제 확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함⁴⁾
 - 특히 창조경제의 실현 수단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침해하는 위조 상품의 존재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1) 지적재산권은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으로 구성.

2) 위조 상품에 대응되는 용어로 진정 상품(Authentic Product)는 위조·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 (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

3) 특허청,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4) 특허청, '지식재산백서', 2012.

- 이에 관세청, OECD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위조 상품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방법

- (국외 유입 규모 추정 방법) OECD의 기존 연구 결과를 통해 위조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부분을 추정
 -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위조 상품 시장 규모는 OECD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상품 수입액의 2%를 가정함
 - 이후 2013년 연평균 환율을 이용하여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위조 상품 시장 규모를 추정함
- (국내 생산 규모 추정 방법)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위조 상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부분을 추정
 - 관세청의 위조 상품 통계상의 세부 품목을 산업연관표상 해당되는 품목을 추출하고 국산재와 수입재의 비율을 계산함.
 - 이후 먼저 추정된 유입 위조 상품 시장 규모에 국산재/수입재 비율을 곱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조 상품 시장 규모를 추정함
- (국내 위조 상품 지하경제 규모 추정 방법) 국외 유입 규모와 국내 생산 규모를 합하여 국내 위조 상품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함
 - 국내 위조 상품 지하경제 규모는 '정품가액' 기준과 '실제 유통가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추정
 - 정품가액이란 위조 상품이 아닌 정품(진정상품)의 시장 가격을 의미
 - 실제 유통가액이란 위조 상품이 정품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실제 거래 가격을 의미⁵⁾

5) 정품가액 대비 위조 상품의 실제 유통가액 비중을 통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하여 대략 20%로 가정함.

2. 국내 유입 위조 상품 적발 현황⁶⁾

○ 국내 유입 위조 상품은 2011~13년 연평균 약 7,548억 원이 적발되었으며, 약 90%의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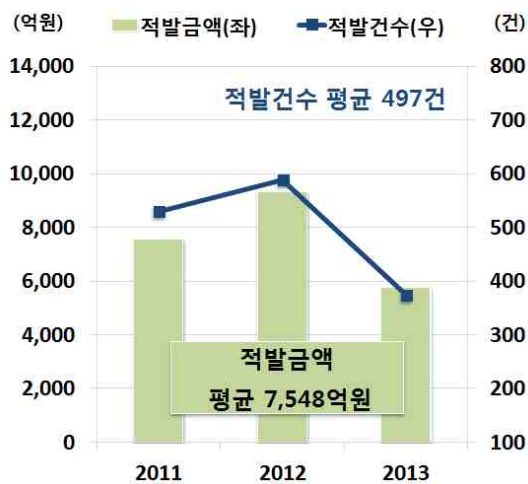
- (적발 건수 및 금액) 연평균 약 497건, 7,548억 원의 위조 상품이 적발

- 국내 위조 상품 적발 금액은 2011년 7,500억 원에서 2012년 9,300억 원, 2013년 5,700억 원으로 2011~13년 연평균 약 7,548억 원 규모가 적발
- 국내 위조 상품 적발 건수는 2011년 530건, 2012년 588건, 2013년 373건으로 연평균 약 497건을 적발

- (침해 유형별) 적발된 위조 상품의 약 90%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위조 상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을 살펴본 결과, 상표권 침해가 444건, 약 6,356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상표권을 제외하면 저작권의 침해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특허권 침해는 1% 미만에 불과

<국내 위조 상품 적발 건수 및 금액>



자료 : 관세청.

주 : 2011~13년 평균.

<국내 위조 상품 적발 건수 및 금액(침해유형별)>

순위	침해 유형	적발 건수(건)		적발 금액(억원)	
		건수	비중 (%)	금액	비중 (%)
1	상표권	444	89.3	6,356	84.2
2	저작권	43	8.6	1,099	14.6
3	특허권	1	0.2	79	1.0
4	기타	10	2.0	41	0.5
합계		497	100.0	7,548	100.0

자료 : 관세청.

주 : 1) 2011~13년 평균

2) 정품가액 기준.

6) 국내 통계(관세청)의 경우 하나의 적발 건수에 다품목·법조중복 등의 경우가 있어 유형별·품목별 및 적출국별 통계의 전체 건수는 상이함.

○ 품목별로는 핸드백·가죽제품이 가장 많이 적발되며 위조 상품의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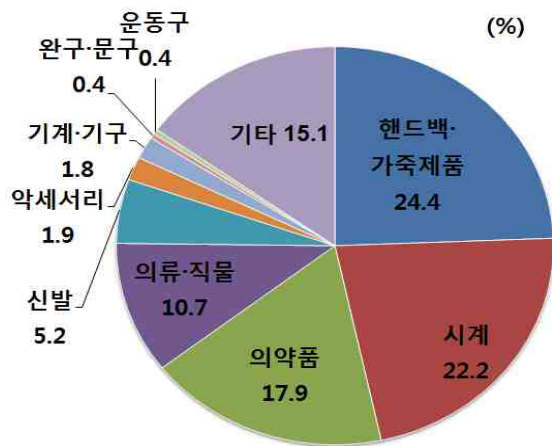
- (품목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조 상품은 핸드백·가죽제품류, 시계류, 의류·직물류 등임

- 국내 세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조 상품은 핸드백·가죽제품류로 2011~13년 연평균 1,841억 원, 24.4%의 비중을 차지
- 시계류 또한 22.2%로 2위의 적발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의약품 17.9%, 의류·직물류 10.7%, 신발류가 5.2%로 조사
- 그러나 적발 금액이 아닌 적발 건수로 분류할 경우, 의류·직물류가 약 190건으로 1위(25.1%), 핸드백·가죽제품류가 2위(144건), 신발류가 3위(90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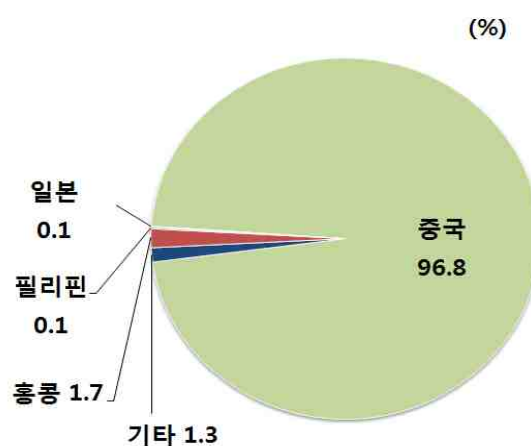
- (적출국별) 국내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 중 약 97%가 중국에서 유입

- 국내 세관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 중 약 7,014억 원(96.8%)의 상품이 중국에서 적출되었으며, 2위 홍콩은 약 122억 원(1.7%)으로 조사
- 3위 필리핀, 4위 일본 등은 모두 0.1% 수준에 불과

<국내 위조 상품 적발비중(품목별)> <국내 위조 상품 적발비중(적출국)별>



자료 : 관세청.
주 : 1) 2011~13년 평균.
2) 정품가액 기준.



자료 : 관세청.
주 : 1) 2011~13년 평균.
2) 정품가액 기준.

7) '적출국'이란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적되어 선하증권(화물운송을 위해 철도 또는 선박에 적재하였다는 사실을 서명한 문서)이 발행된 국가를 의미(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 1-2조).

3.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유·무형 손실 추정

(1)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

○ 위조 상품과 지하경제와의 관련성

- 지하경제란 합법적이지만 조세회피 및 탈세의 목적으로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와 불법적인 거래 모두를 포함⁸⁾
- 위조 상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은 음성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무자료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탓에 추적이 쉽지 않아 세원 포착의 어려움 발생

○ 추정을 위한 가정

- 국제기관들의 연구 결과상 위조 상품 교역액이 전체 상품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2%가 한국에도 적용됨을 가정
 - OECD는⁹⁾ 위조 상품 비중이 세계 무역액의 약 2%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 (2007년 기준)¹⁰⁾함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또한 OECD의 결과를 인용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유럽에 수입되는 위조 상품 규모를 총 수입액의 2%인 252억 달러 (2010년 기준)로 추정한바 있음¹¹⁾

8) 현대경제연구원(2013), '지하경제 해소방안', 경제주평 13-10.

9) OECD(2008), The 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OECD(2009), Magnitude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of Tangible Products: An Update 참조.

10) 무역 거래되는 상품만이 조사 대상으로, 국내 생산·소비되는 상품과 무형 상품은 배제.

11) UNODC(2013),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 위조 상품의 국내 생산/수입 비율이 위조 상품 관련 품목들의 국내 생산/유입 비율과 동일함을 가정

- 위조 상품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의 정상적인 수입재 및 국산재에 대한 수요가 실제 위조 상품 수요에도 적용된다는 가정을 함

○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¹²⁾

: 실제 유통가액 기준 5조 2,000억 원 (유입 2조 3,000억 원 + 생산 2조 9,000억 원)

정품가액 기준 26조 2,000억 원 (유입 11조 4,000억 원 + 생산 14조 8,000억 원)

- (유입 규모) OECD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 상품 규모는 정품가액 기준 연간 약 11조 4,000억 원, 실제 유통가액 기준 약 2조 3,000억 원으로 추정

- 가정 :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 상품 규모를 국내 총 수입액의 2%로 가정

- 식 : 국외 유입 위조 상품 규모 = 2% × 총 수입액

- 추정 : 연평균 국내 유입 위조 상품 규모는 약 104억 달러로 2013년 평균 원/달러 환율로 환산 시 정품가액 기준 약 11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위조 상품 가격(실제 유통가액)이 정품가액의 약 20%라고 가정할 경우¹³⁾, 위조 상품의 실제 유통가액은 약 2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정됨

- (생산 규모) 국산재와 수입재의 소비 비중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조 상품 규모를 정품가액 기준 약 14조 8,000억 원, 실제 상품가액 기준 약 2조 9,000억 원으로 추정

- 가정 : 위조 상품의 국내 생산/수입 비율이 위조 상품 관련 품목들의 국내 생산/유입 비율 130%와 동일함을 가정¹⁴⁾

12)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 상 민간소비지출액을 국산재와 수입재로 구분하여 각 품목별 국산재/수입재 비율을 도출한 후, 이를 가중 평균하여 위조 상품의 국내생산/유입 비율(약 130%)로 간주함.

13) 정품가액 대비 위조 상품의 실제 유통가액 비중을 통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하여 대략 20%로 가정함(10% 가정시 1조 1,000억원, 30% 가정시 3조 4,000억원)

- 식 : 국내 생산 위조 상품 규모 = 130% × 국외 유입 위조 상품 규모.
- 추정 : 연평균 국내 생산 위조 상품 규모는 약 135억 달러로 2013년 평균 원/달러 환율로 환산 시 정품가액 기준 약 14조 8,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 유입 규모 추정과 동일하게 위조 상품의 실제 유통가액이 정품가액의 약 20%¹⁵⁾라고 가정할 경우, 실제 유통가액은 약 2조 9,000억 원 규모로 추정

-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국외 유입 위조 상품 규모와 국내 생산 위조 상품 규모를 합한 국내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는 정품가액 기준 약 26조 2,000억 원, 실제 유통가액은 약 5조 2,000억 원으로 추정

- 총 국내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는 정품가액 기준으로 약 26조 2,000억 원이며 이는 2013년 명목 GDP의 약 1.8% 수준
- 실제 유통가액 기준으로는 약 5조 2,000억 원이며 2013년 명목 GDP의 약 0.4% 수준

<국내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2011~13년 연평균)>

	금 액	
	정품가액 기준	실제 유통가액 기준
국내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A+B)	26조 2,000억 원	5조 2,000억 원
국외 유입 위조 상품 규모 (A)	11조 4,000억 원	2조 3,000억 원
국내 생산 위조 상품 규모 (B)	14조 8,000억 원	2조 9,000억 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1) 국외 유입 위조 상품 규모 = 2% × 총수입액.

2) 국내 생산 위조 상품 규모 = 130% × 국외 유입 위조 상품 규모.

14) 관세청의 지식재산권사범 적발 통계에 근거하여 위조 상품을 품목별로 분류한 후 이를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 항목과 대응시킴. 국산거래표 상의 민간소비지출액을 국산재와 수입재로 구분하여 각 품목별 국산재/수입재 비율을 도출한 후, 이를 가중 평균하여 위조 상품의 국내 생산/유입 비율(약 130%)로 간주함.

15) 10% 가정시 1조 5,000억원, 30% 가정시 4조 4,000억원

(2) 위조 상품 지하경제가 유발하는 유·무형 손실 추정

○ 위조 상품 지하경제가 유발하는 유형의 손실

- (탈세에 따른 세수 손실) 위조 상품이 대부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위조 상품 지하경제 규모에 근거할 경우(실제 유통가액 기준) 연간 약 5,200억 원의 세수 손실(총 국세 수입의 약 0.3%)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위조 상품으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손실 규모를 추정
 - 위조 상품의 실제 유통가액을 정품가액의 20%로 가정하고 부가가치세율 10%를 고려할 경우, 위조 상품의 실제 유통으로 연간 약 5,200억 원의 부가가치세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¹⁶⁾¹⁷⁾
 - 이는 2012년 총 국세 수입 203조 원의 약 0.3%, 총 부가가치세 세수 58조 6,000억 원의 약 0.9%에 해당

- (국내 연관 산업 성장 기회 박탈) 위조 상품의 만연은 국내 관련 정품 대체 소비를 위축시켜 이와 관련된 국내 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
 - 해외 브랜드 위조 상품의 유통 및 소비는 유사한 가격대의 국내 정상적인 제품 소비를 대체하는 결과를 유발함
 - 따라서 위조 상품의 만연을 방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국내 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

16) 우선 국외에서 유입되는 위조 상품의 경우 관세가 부가된 상품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을 계산할 필요가 있음. 국내에서 적발되는 위조 상품의 정품 원산국이 대부분 미국과 EU라는 점을 가정할 경우, 해당 국가와 체결한 FTA로 인해 주요 위조 상품 적발 품목들의 관세율은 0%로 조사. 또한 법인세, 소득세 등은 분석에서 제외함.

17) 정품 가액 대비 위조 상품의 실제 거래 가격 비중을 통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하여 대략 20%로 가정함.(10%로 가정시 약 2,600억원으로 국세 수입의 0.1%, 부가가치세수의 0.4% / 30%로 가정시 약 7,800억원으로 국세 수입의 0.4%, 부가가치세수의 1.3%에 해당)

○ 위조 상품 지하경제가 유발하는 무형의 손실

- (사회적 자본 손실)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시장 신뢰 저하로 사회적 자본 손실에 따른 암묵적인 경제적 비용 발생
 - 위조 상품 유통이 만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란을 야기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 신뢰 저하로 사회적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암묵적인 경제적 비용 발생이 우려됨
 - Knack and Keefer(1997)¹⁸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손실은 정보비용, 거래비용의 증가를 야기하며 신뢰지수가 10%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8%p 하락

- (국가 이미지 훼손) 위조 상품의 불법적인 유통이 만연될 경우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어 대외 거래 상 불리한 점으로 작용
 - 위조 상품의 제조 및 유통은 기업과 제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매출 부진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축적한 수출 제조업 강국이라는 한국의 대외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
 - 예를 들어 위조 상품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할 경우 선진국과 교역시 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른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역으로 한국 기업이 상표 침해 등을 당할 경우에도 적극 대응하기 어려움

18) Knack and Keefer(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 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1997) 112(4).

4. 시사점

- 위조 상품 유통을 방치할 경우 탈세에 따른 세수 손실, 연관 산업의 성장 기회 박탈,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사회적 자본 손실, 국가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조 상품의 생산·유통·소비 근절을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첫째, 단속기관의 전문성 제고, 관련 기관과의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위조 상품 제조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 단속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소규모 영세판매업자보다 위조 상품 제조업자 및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할 필요
- 또한 위조 상품의 글로벌 생산 및 유통 확대에 대응, 각국의 관세청·특허청 등 관련 기관과 국제협력을 강화

둘째, 위조 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위조 상품 유통 단계에서의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

- 온라인을 활용한 위조 상품 유통, 디지털 제품 위조 등 위조 상품의 범위 확대와 유통망 다양화로 단속기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발생
- 현재 운영 중인 '위조 상품 신고 포상금제'의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위조 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 국민들의 자발적인 단속 노력이 더해질 경우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위조 상품의 불법성 및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도움

셋째, 위조 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소비자의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근본적으로 위조 상품 시장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부정적으로 전환시켜 위조 상품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근본적 처방
- 정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사업을 병행하여 위조 상품 근절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함
- 이를 위해 위조 상품 단속 및 신고 제도와 더불어 예방교육 실시, 공익 광고 및 캠페인의 병행을 권장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

백다미 선임연구위원 (dm100@hri.co.kr, 02-2072-6239)